

## 노 사 합 의 서

주식회사 케이티(이하 '회사'라 한다)와 KT노동조합(이하 '조합'이라 한다)은  
조합전임자에 관하여 불임과 같이 합의한다.

불임 : 조합전임자에 관한 사항 1부.

2019.6.17

주식회사 케이티  
회장을 대리하여

경영관리부문장 신 혁우

KT노동조합  
위원장은 대리하여

사업지원실장 변 우영

## 조합전임자에 관한 사항

### 1. 조합전임자

- 가. 조합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자(이하 “근면자”라 한다)와 무급 조합전임자(이하 “무급전임자”라 한다)로 구분한다.
- 나. 회사는 조합전임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.

### 2. 근로시간면제자

- 가. 회사는 회사와의 협의·교섭, 고충처리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면자를 인정한다.
  -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연간 39,600시간으로 한다.
  - 근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연간 2,000시간으로 한다.
- 나.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본 합의서를 체결한 날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.

### 3. 근면자의 운영

- 가. 근면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단, 파트타임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조합은 근면자 명단을 회사에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.
  - 근면자 변경시에는 회사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변경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회사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.

- 파트타임 근면자의 경우, 조합은 사용 3일전까지 사용계획을 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4. 무급전임자

가. 회사는 무급전임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는 것을 인정한다.

- 무급전임자의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.

나. 조합은 지정된 무급전임자 명단의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5. 조합전임자의 처우 등

가. 회사는 조합원이 근면자로서 활동하는 기간을 통상근무로 인정한다.

나. 회사는 조합원이 무급전임자로서 조합에 전임되어 있는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, 전임기간 중의 급여 및 제수당 등은 조합에서 부담한다.

다. 조합원이 전임에서 해지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라. 교섭참여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그 노동조합들 간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배분결과를 회사에 통보한다.

#### 6. 유효기간

가.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따른다.

나.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동관련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변경될 경우 별도 노사합의한다.